

결의안 20-52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인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 비상사태 실존 선포를 연장하는 결의안

글렌데일 시정부의 글렌데일 시정부법 2.84장으로 시의회가 지방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규정한다.

2020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가적 자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정부 기관과 부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상사태 조치를 공식화하였으며, 주정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지방 정부가 지역 비상사태를 갱신하는 기간인 정부법 8630항의 60일 기간을 면제하였다.

2020년 3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코로나19가 시작된 결과로 인해 재난 상황 혹은 주민과 재산의 안전에 대한 극도의 위협으로 지방 비상사태의 실존을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13일, 미합중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비상사태 기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글렌데일 지방법 2.84장과 결의안 20-28호에 따라 지방 비상사태의 실존을 선포하였다.

시의회는 생명, 건강, 안전, 재산 유지에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특정 공공명령을 발령하고, 비준하고, 혹은 연장한 결의안 20-29, 20-33, 20-41호를 채택하였다.

지방 자원을 동원하고, 부처 간 대응을 조정하고, 필수물자의 취득을 가속화하고, 상호 지원을 사용하고, 향후 주정부와 연방정부 환급금을 구하는 시정부의 능력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변화하는 상황과 코로나19 전염병에 계속 대처하기 위한 비상사태 연장의 필요성에 따라 선포된 이 명령은 수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글렌데일 지방법 2.84장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는, 2020년 3월 16일에 선포한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비상사태국장은 생명, 건강,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이에 결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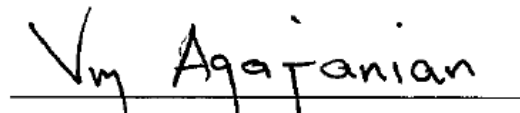
1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가 종료를 선포할 때까지 지역 비상사태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에 선포하고 명령한다.

2항. 지역 비상사태의 실존기간 동안 시정부 비상사태국의 권력, 기능, 의무는 시정부의 주정부법, 헌장, 조례안, 결의안과 시의회가 승인한 글렌데일 비상사태 계획으로 규정할 것을 이에 선포하고 명령한다.

3항. 이 선언서의 사본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비상관리국으로 전달되고 그곳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비상사태 서비스국장에게 전달되며 국장은 주정부 법에 의거하여 수락할 요청을 받게 됨을 이에 선포하고 명령한다. 비상사태 서비스법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글렌데일 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선언을 발령하고, 주지사는 대책과 복구 노력을 저해하는 규정을 면제하고, 캘리포니아 재난원조법에 의거하여 복구지원을 사용하게 하고, 주정부가 주정부와 연방정부 자원과 적절한 연방정부 재난구제프로그램을 신속히 사용하게 할 것을 선포하고 명령한다.

4항. 글렌데일 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자택대피령을 따를 것이며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행되는 것을 항상 확인하면서 규제를 천천히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명령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주민이 장보기나 의사를 방문하기 등 필수업종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집에 머물러 있을 것을 규정한다. 규제가 풀리면서, 시공무원들은 주민과 글렌데일 사업체들은 카운티 보건국이 권고한 것을 이행하며 극도로 주의할 것을 계속 권고한다. 특정 상황에서, 비상사태 서비스국장이나 시의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더 엄격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고, 더 엄격한 조항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덜한 규제를 대신한다.

2020년 5월 12일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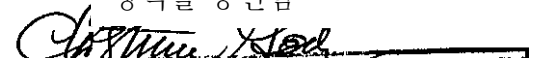
시장

증명함:



시 서기

양식을 승인함



수석 시 감사보

날짜 2020년 5월 13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글렌데일 시)

SS.

본인, 아람 아제미안, 글렌데일 시 서기는 전술한 결의안 20-52호를 2020년 5월 12일에 개최한 비상사태 회의에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다음 투표로 채택되었음을 이에 인증한다.

찬성: 브룩맨, 디바인, 카사키안, 나자리안, 아가자니안

반대: 없음

결석: 없음

기권: 없음



시 서기

채택됨
05/12/20
브롯맨, 카사키안
반대: 드바인, 나자리안

결의안 20-53호

코로나19와 그 외 관련된 합법적인 목적상
글렌데일 시 비상사태권한에 의거
주거용 퇴거 유예조치와 관련된 공공명령을 발령한
과거 결의안을 수정하고 연장하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 시의회의 결의안

국제적, 국가적, 주정부, 지방정부 보건국과 정부기관은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발병에 대응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다양한 결말을 겪었다.

2020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가적 자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정부 기관과 부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상사태 조치를 공식화하였으며, 주정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코로나19가 시작된 결과로 인해 재난 상황 혹은 주민과 재산의 안전에 대한 극도의 위험으로 지방 비상사태의 실존을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13일, 미합중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비상사태 기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글렌데일 지방법 2.84장에 따라 지역 비상사태 시행을 선포하였고 특정한 공공 장소의 봉쇄와 출입 제한을 명령하였다.

2020년 3월 18일, 비상사태 서비스국장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거용 임대인과 상업용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퇴거의 임시 유예를 설정한 공공명령 3호를 발령하였고, 이 명령은 2020년 3월24일 시의회가 수정하고, 재가하고, 연장하고 퇴거 유예에 관한 14일 통지서 규정을 추가하였다.

2020년 3월27일, 주거용 세입자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월세 납부일 이전이나 이후 7일을 초과하지 않는 적절한 기간 내에 집주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경우 퇴거소송에 응답할 시간을 연장하는 행정명령(N-37-20)을 주지사는 발령하였다.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세입자는 연체된 월세를 납부할 때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 문서를 집주인에게만 제공하면 되며, 시정부의 14일 통지서 요건을 대체하는 법적 효력이 있다.

2020년 4월 6일, 주정부 법원에 대한 행정당국인 캘리포니아 사법의회(CJC)는 주지사가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된 비상사태를 폐지한 후 90일까지 퇴거소송 소환장의 발급을 금지하는 비상사태령을 발령하였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 퇴거가 필요하고, 또한 적어도 60일 동안 기존 사건이 연기된 경우는 제외한다.

2020년 4월 8일, 비상사태 서비스국장은 퇴거유예 명령을 주지사의 주거용 퇴거에 관한 행정명령과 퇴거소송을 연기하는 캘리포니아 사법의회 명령에 종속되게 하고 또한 집주인이 미납 월세에 대한 연체료, 수수료, 이자의 부과나 수금, 혹은 연기된 월세를 수금하기 위한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공공명령 6호를 발령하였다.

2020년 4월 14일, 결의안 20-41호에 따라 시의회는 퇴거유예의 납부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공공명령 6호를 인준하고 확장하였고 2020년 5월 31일까지 퇴거유예 공공명령을 연장하였다.

위기 상황이 지속하면, 이전 결의안과 공공명령의 만료마감일을 연장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고 공공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보호를 채택한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항. 주거용 퇴거의 퇴거유예를 규정한 비상사태 공공명령에 관련된 결의안 20-41호 (1항, B관)은 다음과 같이 이에 연장된다.

주거용 세입자에 대한 퇴거 유예. 전례없는 이 비상사태 시기동안 글렌데일 주민을 보호하고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용 임대인에 대한 퇴거 유예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고, 결의안 20-41호를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수정된 것은 제외한다.

A. 주거용 세입자가 체납된 월세를 납부하는 기간은 이 명령의 만료일로부터 12개월이다.

B. 납부 시작일이 시작하고 이 유예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에 끝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4분기 말에 만기되는 연기한 월세에서 최소한 25%가 되는 미납월세의 날수 계산한 납부일정을 정해야 한다. 세입자가 납부기간에 임대계약을 끝내는 경우, 연기된 월세 총액은 즉시 납부해야 한다.

C. 상기 B관에도 불구하고, 집주인과 세입자는 다른 납부약정에 동의할 수도 있다.

2항.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판결로 이 공공명령의 조항이나 적용이 무효가 되면, 무효 조항이나 혹은 적용하지 않고 실행하는 이 결의안이나 명령의 조항, 구절, 적용에 대해 그러한 무효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구절, 조항, 문장, 단어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선언한다.

3항.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으로 규정한 글렌데일 지방법 1.20장에 의거하여 상기 공공명령의 위반을 시 검찰청에 회부한다. 경찰관은 각자 재량으로 이 명령을 집행하고 명령의 의도를 항상 유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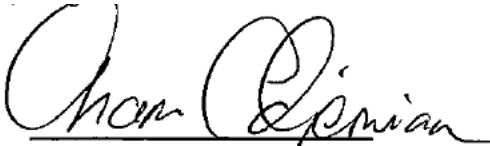
위반사항은 글렌데일 지방법원 1.24장의 조항으로 집행되며, 이에 규정된 집행절차와 함께, 첫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의 벌금, 세번째 소환장은 \$2,000의 벌금으로 규정한다.

4항. 이 결의안과 해당 명령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나 캘리포니아 주가 규정한 더 엄격한 제한사항을 대신하지 않는다.

2020년 5월 12일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함


시장

증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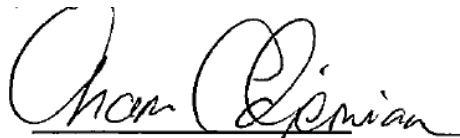


시 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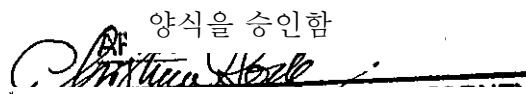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SS.
글렌데일 시)

본인, 아람 아제미안, 글렌데일 시 서기는 전술한 결의안 20-53호를 2020년 5월 12일에 개최한 정기 회의에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다음 투표로 채택되었음을 이에 인증한다.

찬성: 브룩맨, 카사키안, 아가자니안
반대: 디바인, 나자리안
결석: 없음
기권: 없음



시 서기

양식을 승인함


수석 시 검사보

날짜 2020년 5월 13일

채택됨
05/12/20
카사키안/브롯맨
반대: 나자리안

결의안 20-54호

코로나19와 그 외 관련된 합법적 목적에 대한
글렌데일 시의 비상사태권한에 의거한
상업용 퇴거 유예와 관련된 공공명령을 발령한
과거 결의안을 수정하고 연장하는 글렌데일 시의회 결의안

국제적, 국가적, 주정부, 지방정부 보건국과 정부기관은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발병에 대응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다양한 결말을 겪었다.

2020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가적 자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정부 기관과 부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상사태 조치를 공식화하였으며, 주정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이사회와 공공보건국은 국가 전체적인 코로나바이러스의 늘어난 확산에 대응하여 지방과 공공건강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13일, 미합중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비상사태 기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글렌데일 지방법 2.84장에 따라 지역 비상사태 시행을 선포하였고 특정한 공공 장소의 봉쇄와 출입 제한을 명령하였다

2020년 3월 18일, 비상사태 서비스국장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거용 세입자와 상업용 임대인에 대한 퇴거를 금지하는 유예를 설정한 글렌데일 공공명령 3호를 발령하였고, 이 명령은 2020년 3월24일 시의회가 수정하고, 인준하고 연장하였으며 퇴거 유예의 14일 통지 조항을 추가하였다.

2020년 3월27일, 주지사는 월세 납부일 전이나 월세 납부일로부터 7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주거용 세입자가 퇴거 소송에 응답할 시간을 연장하는 행정명령(N-37-20)을 발령하였다. 주지사의 명령으로, 세입자는 체납된 월세를 납부할 때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 문서만 집주인에게 제공하면 되며, 주지사는 코로나19 사유로 인한 주거용 임대인의 월세 유예를 허가하고 불법유치소송에 대응할 추가적인 시간을 허가하는 보호조항을 채택하였다.

2020년 4월 6일, 주정부 법원에 대한 행정당국인 캘리포니아 사법의회(CJC)는 주지사가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된 비상사태를 폐지한 후 90일까지 퇴거소송 소환장의 발급을 금지하는 비상사태령을 발령하였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 퇴거가 필요하고, 또한 적어도 60일 동안 기존 사건이 연기된 경우는 제외한다.

2020년 4월 8일, 비상사태 서비스국장은 퇴거유예 명령을 주지사의 거주용 퇴거에 관한 행정명령과 퇴거소송을 연기하는 캘리포니아 사법의회의 명령에 종속되게 하고 또한 집주인이 미납 월세에 대한 연체료, 수수료, 이자의 부과나 수금, 혹은 연기된 월세를 수금하기 위한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공공명령 6호를 발령하였다.

2020년 4월 14일, 결의안 20-41호에 따라 시의회는 퇴거유예의 납부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공공명령 6호를 인준하고 확장하였고 2020년 5월 31일까지 퇴거유예 공공명령을 연장하였다.

위기 상황이 지속하면, 이전 결의안과 공공명령의 만료마감일을 연장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고 공공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보호를 채택한다.

글렌데일 시의회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항. 주거용 퇴거의 퇴거유예를 규정한 비상사태 공공명령에 관련된 결의안 20-41호 (1항, B관)은 다음과 같이 이에 연장된다.

A. 상업용 임대인에 대한 퇴거 유예. 전례없는 이 비상사태 시기동안 글렌데일 상업용 임대인을 보호하고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상업용 임대인과 사업체에 대한 퇴거 유예는 2020년 6월 3일까지 연장되고, 결의안 20-41호를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수정된 것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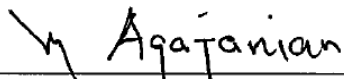
1. 세입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전액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월세 전액이나 일부분을 연체한다는 사실을 월세 납부일 이전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적절한 기간 내에 집주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2. 상업용 임대인이 체납월세를 납부할 기간은 이 명령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다.
3. 상업용 퇴거유예를 수정하고 연장하는 이 결의안 날짜로부터 임대인이 임대한 주식회사인 상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2항.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판결로 이 공공명령의 조항이나 적용이 무효가 되면, 무효 조항이나 혹은 적용하지 않고 실행하는 이 결의안이나 명령의 조항, 구절, 적용에 대해 그러한 무효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구절, 조항, 문장, 단어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선언한다.

3항.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으로 규정한 글렌데일 지방법 1.20장에 의거하여 상기 공공명령의 위반을 시 검찰청에 회부한다. 경찰관은 각자 재량으로 이 명령을 집행하고 명령의 의도를 항상 유념한다. 위반사항은 글렌데일 지방법원 1.24장의 조항으로 집행되며, 이에 규정된 집행절차와 함께, 첫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의 벌금, 세번째 소환장은 \$2,000의 벌금으로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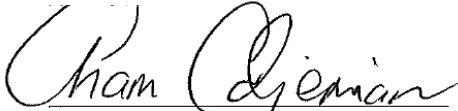
4항. 이 결의안과 해당 명령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나 캘리포니아 주가 규정하는 더 엄격한 제한사항을 대신하지 않는다.

2020년 5월 12일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함



시장

증명함:



시 서기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글렌데일 시)

SS.

본인, 아람 아제미안, 글렌데일 시 서기는 전술한 결의안 20-54호를 2020년 5월 12일에 개최한 정기 회의에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다음 투표로 채택되었음을 이에 인증한다.

찬성: 브룩맨, 드바인, 카사키안, 아가자니안
반대: 나자리안
결석: 없음
기권: 없음

양식을 승인함


수석 시 검사보

날짜 2020년 5월 13일

채택됨
05/12/20
나자리안/드바인
반대: 브롯맨

결의안 20-55호

코로나19와 그외 관련되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글렌데일 비상사태권한에 의거하여 얼굴가리개에 대한 공공명령을 발령한 이전 결의안을 연장하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의 결의안

국제적, 국가적, 주정부, 지방정부 보건국과 정부기관은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발병에 대응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다양한 결말을 겪었다.

2020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가적 자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정부 기관과 부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상사태 조치를 공식화하였으며, 주정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이사회와 공공보건국은 국가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의 늘어난 확산에 대응하여 지방과 공공건강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13일, 미합중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비상사태 기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글렌데일 지방법 2.84장에 따라 지역 비상사태 시행을 선포하였고 특정한 공공 장소의 봉쇄와 출입 제한을 명령하였다

위기 상황이 지속하면, 이전 결의안과 공공명령의 만료마감일을 연장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고 공공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보호를 채택한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항. 얼굴가리개에 관한 비상사태 공공명령에 관련된 결의안 20-41호는 2020년 6월 3일까지 이에 연장하고 다음과 같이 독해할 것을 이에 확인한다.

- A. 2020년 4월 10일에 수정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 “자택대피령”이나 후속으로 수정된 (“카운티 공공보건명령”)으로 정의되는 필수 근로자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은 주거지, 직장에서 나가거나, 그외 동네에서 산책하거나, 필수업체로 걸어서 출퇴근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등으로 필수활동을 위해 밖에 나가는 경우 스카프(구멍이 없는 뽁뽁한 천), 두건, 목 가리개, 천 얼굴 가리개 등 얼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자가용으로 혼자거나 혹은 운전자의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 운전자는 얼굴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가족이 아닌 구급요원, 요식서비스근로자와 대면하는 등의 목적으로 창문을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2세 이하 어린이(신생아 포함)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2세부터 8세 어린이는 사용해도 되지만 안전하게 숨을 쉬고 숨이 막히거나 질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성인의 감독 아래 사용해야 한다. 호흡기 문제가 있는 어린이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B.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필수업종으로 간주되는 사업체에서 일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무하면서 코와 입을 가리는 얼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1. 통조림, 말린 음식, 싱싱한 과일과 야채, 애견용품, 물, 신선한 고기, 생선, 가금류, 가정용품(청소용품이나 개인 생활용품) 등을 소매로 판매하는 식품점, 공인 파머스 마켓, 농장과 식품 가판대, 슈퍼마켓, 푸드뱅크, 편의점, 창고형 가게, 기타 시설. 이것은 식품을 판매하는 가게와 식품이 아닌 물건을 파는 가게, 그리고 안전, 위생, 주거지에서 필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판매하는 가게이다.
2. 경제적 불우이웃이나 어려운 사람들(범죄조직 예방과 개입, 가정폭력, 노숙자 서비스 기관 등)에게 음식, 대피소, 복지서비스, 생필품을 제공하는 단체와 사업체
3. 주유소, 자동차 공급업체, 모바일 자동차 정비, 자동차 정비소(소매업체나 중고자동차 딜러십과 옆에 있거나 관련이 있는 자동차 정비소를 포함하나 제한하지 않음), 자전거 수리소, 관련 시설.
4. 은행, 크레딧 유니언, 금융기관, 보험회사
5. 철물점, 묘목장; 건물용품점
6. 배관공, 전기공, 해충 구제업자, 경비/수위, 핸디맨 서비스, 장례식 직원과 장의사, 이사 서비스, HVAC 설비공, 목수, 식물서비스, 나무관리업, 조경사, 정원사, 건물관리자, 안전, 위생, 건물의 필수적 운영과 기타 필수업종의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보안원
7. 우체통 등의 우편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8.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조건으로 원거리 학습을 진행하고, 픽업 식사를 제공하거나,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칼리지, 대학교)
9. 빨래방, 드라이클리너, 세탁소 제공인

10. 음식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식당과 요식업체임, 그러나 배달, 드라이브 스루, 포장음식만 됨. 실내와 실외 식사는 허가하지 않는다. 2(a)-(d)항에 의거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한 병원, 양로병원, 기타 면허있는 헬스케어 시설의 카페테리아, 매점, 식당은 식당에서 먹는 서비스를 제공해도 된다.
11. 재택근무자가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컴퓨터용품의 공급업체
12. 필수업종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나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13. 식료품, 음식, 물건, 서비스를 주거지, 필수업종, 헬스케어 운영, 필수 기반시설에 직접 배송하고, 트럭으로 운송하고, 운반하고, 물류지원을 제공하는 비 제조업체, 운송업이나 배송업
14. 항공사, 택시, 합승서비스, 이 명령으로 특별히 허가된 목적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운송인
15. 노인, 성인,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재택 간병시설
16. 노숙자, 장애인, 노인, 성인, 어린이, 동물을 위한 주거용 시설과 보호소
17. 법률상 위임된 활동에 준하여 지원이 필수적인 경우 법률서비스, 급여나 회계서비스 등의 전문서비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 그에 부수적인 것 등인 허가증 발급, 검사, 건축, 주택 소유권의 이전과 기록
18. L.A. 카운티 명령에서 면제받은 직원들이 L.A. 카운티 명령의 약관으로 허가받고 근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아원
19. 호텔, 모텔, 공유 임대유닛, 비슷한 시설
20. 공사, 운영, 검사, 공사장의 유지와 공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공사인부(주택 공사 포함)

C. 현재 얼굴 가리개는 의료용 마스크나 N95 호흡기가 아니어도 되지만, 스카프나 두건 등의 천 가리개도 된다. 이러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는 본인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재사용할 수 있는 얼굴 가리개를 물세탁해야 한다.(최소한 하루 한번) 일회용 얼굴 가리개는 쓰레기통에 적절히 폐기해도 된다. 질병통제국의 지침과 글렌데일 시 방침의 의무요건에 따라서 공공 안전구급요원은 보호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D. 상기 규정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고용주는 직원이 최소한 30분 동안 손을 씻을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모든 고용주는 직원에게 본인 부담으로 비 의료용

얼굴 가리개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고용주는 직원이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필수 청결용품이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권고한 손 세정 규정을 지키기 위해 고용주 부담으로 제공한 필수 위생품이 비축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고용주는 고객, 방문객, 직원들이 서로간에 가능한 6피트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 공공명령의 1항에 규정된 사업체와 단체의 고객과 방문객은 직원과 고객을 위한 추가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전부 코와 입에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현재, 얼굴 가리개는 의료용 마스크나 N95 호흡기가 아니어도 되지만, 스카프나 두건 가리개 등의 천 가리개도 된다. 공공명령의 B항에 규정된 사업주나 운영자는 이 명령으로 규정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출입이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B항의 모든 소매업체는 판매 시점에서 계산원과 고객을 분리하는 플렉시 글라스를 설치할 것을 권한다. 이것이 권고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E. 코로나바이러스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치안관은 합법적으로 구금된 개인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인이 얼굴 가리개가 없으면, 치안관이 제공하게 된다.


2항.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판결로 이 공공명령의 조항이나 적용이 무효가 되면, 무효 조항이나 혹은 적용하지 않고 실행하는 이 결의안이나 명령의 조항, 구절, 적용에 대해 그러한 무효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구절, 조항, 문장, 단어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선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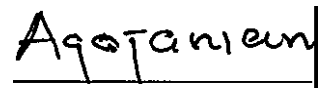
3항.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으로 규정된 글렌데일 지방법원 1.20장에 의거하여 상기 공공명령의 위반을 기소하기 위해 시 검찰청에 회부될 수 있다. 이 명령을 집행하면서 경관은 각자 재량을 사용하고 명령의 의도를 항상 염두에 둔다. 위반사항은 글렌데일 지방법 1.24장의 조항으로 집행하고, 이에 규정한 집행방식과 함께 첫번째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 세번째 소환장은 \$2,000로 규정한다.


4항. 이 결의안과 해당 명령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나 캘리포니아 주가 규정한 더 엄격한 제한사항을 대신하지 않는다.

2020년 5월 12일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함

증명함:


시 서기


시장

양식을 승인함


수석 시 검사보
날짜 2020년 5월 13일

U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글렌데일 시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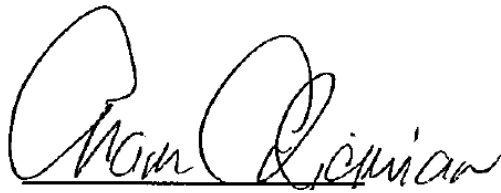
본인, 아람 아제미안 글렌데일 시 서기는 전술한 결의안 20-55호를 2020년 5월 12일에 개최한 정기 회의에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다음 투표로 채택되었음을 이에 인증한다.

찬성: 드바인, 카사키안, 나자리안, 아가자니안

반대: 브롯 맨

결석: 없음

기권: 없음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Aram Azemian". The signature is written in a cursive style with large, rounded letters.

시 서기

결의안 20-56호

**코로나19와 그의 관련되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글렌데일 비상사태권한에 의거하여
임대료 인상에 관한 공공명령을 발령한 이전 결의안을 연장하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의 결의안**

국제적, 국가적, 주정부, 지방정부 보건국과 정부기관은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발병에 대응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다양한 결말을 겪었다.

2020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가적 자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정부 기관과 부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상사태 조치를 공식화하였으며, 주정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이사회와 공공보건국은 국가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의 늘어난 확산에 대응하여 지방과 공공건강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13일, 미합중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비상사태 기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글렌데일 지방법 2.84장에 따라 지역 비상사태 시행을 선포하였고 특정한 공공 장소의 봉쇄와 출입 제한을 명령하였다

2020년 3월 24일, 결의안 20-33호에 따라 시의회는 이전 명령을 2020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였고, 코스타 하킨스 임대주택법 (1995년 2월 1일 전에 건축한 유닛, 단독주택, 개인 콘도 유닛)에 따라 임대료 동결로 면제되지 않은 유닛에 임대료 동결을 규정하였다.

2020년 3월 25일, 비상사태 서비스국장은 임대료 인상을 이전에 했던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 동결명령을 임대료를 동결하기 위해 적용할 것을 규정한 공공명령 5호를 발령하였고, 임대료를 인상하기 바라는 집주인은 명령이 더 유효하지 않게 된 이후 새롭게 임대료 인상 통지서를 발령해야 한다.

2020년 4월 14일, 결의안 20-41호에 따라 시의회는 임대료 동결에 관한 공공명령 5호를 재가하였고 모든 공공명령을 2020년 5월 15일까지 연장하였으며, 2020년 5월 31일까지 유효한 퇴거 유예는 제외한다.

위기 상황이 지속하면, 이전 결의안과 공공명령의 만료마감일을 연장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고 공공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보호를 채택한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항. 임대료 인상을 중단하고 임대료 유예의 종료에 관한 비상사태 공공명령에 관련된 결의안 20-33호와 20-41호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이에 연장된다.

A. 주거용 건물의 임대료 인상. 결의안 20-41호의 제정으로 글렌데일 시의회가 목표한 이 전례없는 비상사태동안 글렌데일 주민을 보호하고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3월 24일부터 유효한 임대료 인상 동결이 발령되었고, 임대료 인상 통지서를 언제 송부했는지 관계없이 주거용 세입자의 월세는 2020년 3월 24일부터 이 명령이 대기 중인 기간동안 동일한 비율로 남게 된다. 이 명령의 만료일에 임대료를 인상하고 싶은 집주인은, 주정부 법에 따라, 인상된 임대료의 시작일과 인상된 가격이 분명히 적은 새로운 임대료 인상 통지서를 발령한다. 1995년 2월 1일 이후 건축한 아파트, 개인 콘도 유닛,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임대료 동결은 글렌데일 시의 주거용 임대부동산에 전부 적용된다. 연장 체류용으로 임대한 부수주택유닛과 호텔객실에도 적용된다.

2항.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판결로 이 공공명령의 조항이나 적용이 무효가 되면, 무효 조항이나 혹은 적용하지 않고 실행하는 이 결의안이나 명령의 조항, 구절, 적용에 대해 그러한 무효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구절, 조항, 문장, 단어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선언한다.

3항.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으로 규정한 글렌데일 지방법 1.20장에 의거하여 상기 공공명령의 위반을 시 검찰청에 회부한다. 경찰관은 각자 재량으로 이 명령을 집행하고 명령의 의도를 항상 유념한다. 위반사항은 글렌데일 지방법원 1.24장의 조항으로 집행되며, 이에 규정된 집행절차와 함께, 첫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의 벌금, 세번째 소환장은 \$2,000의 벌금으로 규정한다.

III
III
III
III

4항. 이 결의안과 해당 명령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나 캘리포니아 주가 규정한 더 엄격한 제한사항을 대신하지 않는다.

2020년 5월 12일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함

증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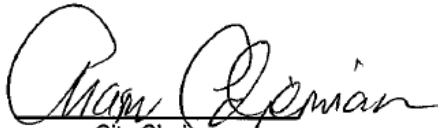

시 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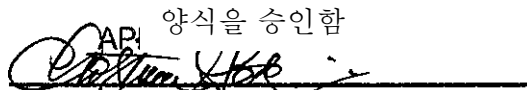

시장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SS.
글렌데일 시)

본인, 아람 아제미안 글렌데일 시 서기는 전술한 결의안 20-56호를 2020년 5월 12일에 개최한 정기 회의에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다음 투표로 채택되었음을 이에 인증한다.

찬성: 브룩맨, 디바인, 카사키안, 나자리안, 아가자니안
반대: 없음
결석: 없음
기권: 없음


시 서기

양식을 승인함

수석 시 검사보
날짜 2020년 5월 13일

결의안 20-57호

**코로나10와 기타 관련된 합법적 목적에 관한
글렌데일 비상사태권한에 의거한 특정 시립시설의 폐쇄와 관련된
공공명령을 발령한 이전 결의안을 연장하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의 결의안**

국제적, 국가적, 주정부, 지방정부 보건국과 정부기관은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발병에 대응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다양한 결말을 겪었다.

2020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가적 자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정부 기관과 부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상사태 조치를 공식화하였으며, 주정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가적 자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정부 기관과 부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상사태 조치를 공식화하였으며, 주정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13일, 미합중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비상사태 기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글렌데일 지방법 2.84장에 따라 지역 비상사태 시행을 선포하였고 특정한 공공 장소의 봉쇄와 출입 제한을 명령하였다

2020년 3월 18일, 비상사태 서비스 국장은 시가 소유한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서 시의 등산로와 스포츠/운동 경기장, 운동장, 운동시설은 문을 닫는 글렌데일 공공명령 2020-04를 채택하였다.

2020년 4월 14일, 결의안 20-41호에 따라 시의회는 2020년 5월 31일까지 유효한 퇴거유예를 제외한 모든 공공명령을 2020년 5월 15일까지 연장하였다.

위기 상황이 지속하면, 이전 결의안과 공공명령의 만료마감일을 연장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고 공공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보호를 채택한다.

글렌데일 시의회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항. 시가 소유한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서 시립 스포츠/운동 경기장, 운동장, 운동시설은 문을 닫는 비상사태 공공명령과 관련된 결의안 20-33호와 20-41호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이에 연장한다.

A. 특정 시립시설의 폐쇄. 코로나19 발병에 대응하여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한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서 시립 스포츠/운동 경기장, 운동장, 운동시설은 폐쇄해둔다. 비상사태 서비스국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의 명령에 일치하면 이 명령에서 이 문단을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

2항.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판결로 이 공공명령의 조항이나 적용이 무효가 되면, 무효 조항이나 혹은 적용하지 않고 실행하는 이 결의안이나 명령의 조항, 구절, 적용에 대해 그러한 무효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구절, 조항, 문장, 단어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선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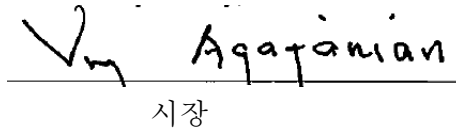
3항. 공공명령의 위반은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을 규정하는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1.20항에 의거하여 시 검찰청에 고소하기 위해 회부될 수 있다. 집행관은 이 명령을 집행하면서 본인의 재량을 사용하고 항상 명령의 의도를 엄두에 두어야 한다. 위반은 본문에서 규정된 다른 집행법과 함께 첫번째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의 벌금, 세번째 소환장은 \$2,000의 벌금을 규정하는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1.24항의 규정으로 집행된다.

4항. 이 결의안과 해당 명령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나 캘리포니아 주가 규정한 더 엄격한 제한사항을 대신하지 않는다.

2020년 5월 12일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함

증명함:


시 서기


시장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글렌데일 시)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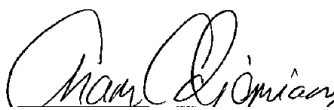
본인, 아람 아제미안, 글렌데일 시 서기는 전술한 결의안 20-57호를 2020년 5월 12일에 개최한 정기 회의에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다음 투표로 채택되었음을 이에 인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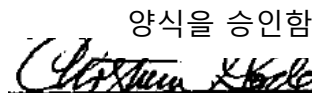
찬성: 브룩맨, 드바인, 카사키안, 나자리안, 아가자니안

반대: 없음

결석: 없음

기권: 없음


시 서기

양식을 승인함


수석 시 검사보
날짜 2020년 5월 13일

채택됨
05/12/20
나자리안/카사키안
반대: 브룩맨, 드바인

결의안 20-58호

2020 임대료와 모기지 취소법안 제정을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의 결의안 (H.R. 6515)

국제적, 국가적, 주정부, 지방정부 보건국과 정부기관은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발병에 대응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다양한 결말을 겪었다.

2020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가적 자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정부 기관과 부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상사태 조치를 공식화하였으며, 주정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가적 자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정부 기관과 부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상사태 조치를 공식화하였으며, 주정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13일, 미합중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비상사태 기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글렌데일 지방법 2.84장에 따라 지역 비상사태 시행을 선포하였고 특정한 공공 장소의 봉쇄와 출입 제한을 명령하였다.

시의회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거용 세입자와 상업용 임대인에 대한 퇴거를 금지하는 유예를 설정한 다수의 글렌데일 공공명령을 발령하였다.

“2020 임대료와 주택용자 취소 법안” (H.R. 6515)으로 현재 국가 비상사태 선포기간동안 월세와 실거주지의 주택용자 납부가 취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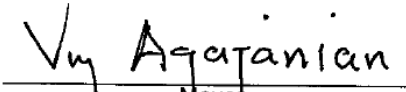
유예로 2020년 4월 납부금을 보상하기 위해 소급하고 세입자나 주택소유주의 채무가 누적되지 않고 완납금의 탕감이 성립된다. 법안에 의거하여, 집주인과 대출자가 5년동안 공정한 임대와 대출관행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면 연방정부는 집주인과 대출자가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 구제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비영리단체, 공공주택국, 협동조합, 커뮤니티 토지신탁회사,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개인 임대용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용자금을 전부 조달하는 매수자금을 만든다. 이 자금은 경기 침체에 따라 독자생존 가능한 주택의 손실을 줄이고, 부동산 투기위험을 줄이고, 시장에 나오는 저렴한 저소득층 유닛 아파트를 늘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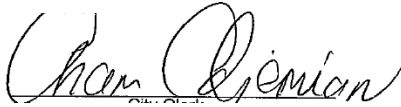
글렌데일에서 위기 상황이 지속하면, 공공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보호를 채택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결의하는 바, 글렌데일 시는 글렌데일 세입자와 주택용자 대출자에게 지원을 허가하는 “2020 임대료와 주택용자 취소법안”(H.R. 6515)과 비슷한 법안을 지지한다. 필요하다면 여기면 공무원이 법안을 지지하는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2020년 5월 12일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함.


시장

증명함:


시 서기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SS.
글렌데일 시)

본인, 아람 아제미안, 글렌데일 시 서기는 전술한 결의안 20-58호를 2020년 5월 12일에 개최한 정기 회의에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다음 투표로 채택되었음을 이에 인증한다.

찬성: 카사키안, 나자리안, 아가자니안
반대: 브롯맨, 드바인
결석: 없음
기권: 없음

양식을 증명함:



시 검사
날짜 5/12/20